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9월 27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2. 제안이유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23.7.1.시행)에 따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및 요금부과 체계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해 군위군 지역에 2년간 유예 및 2년간 단계적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위군 지역의 급수공사비 산출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군위군 지역의 요금 부과 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제29조)
- 군위군 지역의 감면 및 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39조, 제42조, 제44조)
-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신설(안 부칙)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현행 군위군의 수도급수 관련 규정을 대구시와 이원화하여 반영하고, 경과규정 신설을 통해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일원화된 규정으로 시행하고, 시민 편의 증진 및 부담경감을 위한 조문과 기타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한 것임.
- 안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에서는 급수구역을 고시하여 구경별로 정액 공사비를 적용하는 대구시와 급수구역의 고시 없이 비정액제로 실액공사비를 적용하는 현행 군위군의 규정을 이원화하여 별도 규정한 것이며, 향후 군위군 급수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급수구역을 새롭게 고시하게 되며 2026년 1월부터 대구시와 동일한 급수공사비를 적용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안 제13조(공사비의 선납)에서는 급수공사비를 전자결제 방법으로 선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수도법」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를 근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고, 납부자 편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13조제5항 및 안 제42조(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 제4항에서는 수혜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 대하여 현행 군위군 규정을 신설한 것임.

- 안 제20조(신고)에서는 급수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수용가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신고사항으로 신설하였으나 이는 수도 사용자등이 이미 신고를 하고 있던 사항이며,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28조(수도사용요금)에서는 수도사용요금 책정을 위한 사용료 요율표를 규정하였으며 사용수량이 단계별로 책정되어 있던 군위군의 요금을 구분별로 통일함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대구시와 일원화하고자 함이며, 통합 전 단계적 조정을 통해 요금 조정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용료 요율표 비교 >

(단위 : 원)

구 분	사용수량(㎡)	대구시	군위군		
			2024년~2025년	2026년	2027년
가정용	1-20	690	545	570	690
	21-30		765		
	31 이상		1,035		
일반용	1-50	1,290	788	1,040	1,290
	51-100		953		
	101-300		1,183		
	301~500		1,491		
	501 이상		1,896		
욕탕용 (대중탕용)	1-300	1,170	829	1,010	1,170
	301-500		989		
	501 이상		1,239		
공업용 (전용 공업용)	원인자부담(성서,염색) 1~200	370	788	480	480
	원인자미부담(서대구,달성) 201이상	480	1,261		

- 안 제29조(업종의 구분)에서는 군위군 지역의 사용요금부과를 위한 현행 군위군의 업종 구분표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36조(납부고지) 및 안 제39조의2(수도요금의 할인)에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신청에 의해 요금의 납부고지를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도록 고지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수도 사용자등의 편의성 및 징수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음.
- 안 제37조(임시급수)에서는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을 신설한 것으로, 현재 기한의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건축기간이 길어질 경우 임시급수 사용기간이 끝나 급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활히 급수할 수 있도록 행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한 것임.
- 안 제38조(수수료) 및 안 제42조(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에서는 기존의 정수처분해제 시 부과하던 수수료와 징수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방안’에 따른 수수료 부과 삭제 권고로 설명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미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수돗물이 끊긴 후 다시 공급받고자 할 때 미납요금 외에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임.

○ 안 제39조(요금 등의 감면)에서는 현행 군위군 지역의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임.

< 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대상자 비교 >

* 대구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제조업체	학교	옥내누수	자동이체	e메일
대상	생계, 의료급여	공장등록 제조업체	유치원, 초중고특수	벽체나 땅속 등 비노출배관	자동이체 수용가	자동이체 중 e메일
감면 범위	가정용 월 최대 10m ³	일반용보다 낮은 요금 (별도규정)		누수금액의 50%	요금의 1% (5,000원 한도)	200원

* 군위군

구분	사회복지시설	학교	옥내누수	기초생활수급자 등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대상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중·고	지하 누수	수급자 전체	소년소녀 가 장	국가 독립 고체	정도가 심한 장애인	18세미만 3명이상
감면 범위	일반용 1단계		누수금액 50%	가정용 월 15m ³				

○ 안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의 제2항에서 급수관 세척·재생 또는 교체 등 비용의 보조 대상에서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재량권 남용 및 특혜 발생 소지를 막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있음.

○ 안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에서는 수도 계량기의 기물 훼손 및 망실시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나, 동파 및 자연재해의 경우 비용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재해에 따른 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 안 제44조(과태료 등)에서는 현행 군위군 지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 것임.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비교 >

위 반 내 용	과태료 및 추징금	
	대구시	군위군
급수도용, 무승인급수공사	과태료 : 300,000원 추징금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과태료 : 200,000원 추징금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가정용 2배)
정수처분 급수전의 무단개전	과태료 : 100,000원 추징금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과태료 : 50,000원(가정용 30,000원) 추징금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가정용 2배)
계량기 작용방해·훼손·무단철거·망실·매몰 및 공작물의 설치	과태료 : 200,000원	과태료 : 50,000원(가정용 30,000원)
계량기 봉인파손		과태료 : 50,000원(가정용 30,000원)
수돗물 판매금지	과태료 : 100,000원	과태료 : 50,000원(가정용 30,000원) 추징금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가정용 2배)

- 안 제46조(검침업무 등의 위탁)에서는 대구시는 위탁 없이 공무원 근로자를 채용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군위군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임.
- 안 제48조(권한의 위임)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권한 위임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안 부칙에서 상기 이원화 규정들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여 2026년부터 통합 시행할 예정임.

- 군위군의 별도 규정을 신설한 것과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군위군 편입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와 군위군을 비교하였을 때 군위군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므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민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 그 외 안 전반에 대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행정권한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혀 적고 열거된 사항을 호, 목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명시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